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현기 의원 외 11명

나. 의안번호 : 제2699호

다. 제출일자 : 2025. 5. 21.

라. 회부일자 : 2025. 5. 29.

2. 제안사유

-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독 및 관련 업무 추진의 행정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사 사장이 예산편성,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6. 3. ~ 6. 7.

○ 제출의견 : 있음

제출자	제출의견(요약)
한성욱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 회)	-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 법인의 법인격과 경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 하며, 이는 법령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유시장경제 원칙에도 반하는 행정적 과잉 개입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 1. 서울시의회는 자율경영과 법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조례 개정을 즉각 철회 2. 서울시는 각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의 원칙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개선에 집중 3. 일률적인 행정개입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운영환경을 보장 4. 노사자율의 원칙을 훼손하는 모든 사전검열 시도를 중단
이창범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노동 조합협의회)	- 동 개정안은 겉으로는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지방공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 독립성을 저해하고, 이를 통해 시의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며, 이는 행정의 정치화를 위한 수단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굴욕적인 조 항이며, 임직원 전체를 모욕하는 행위로 그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이 당장 폐기되어야 함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¹⁾

○ 제출의견 : 원안가결

- 市 주무부서와 예산, 소송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함

1) 도시철도과-6976(2025.6.4.) “제331회 정례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효과적으로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함) 사무를 감독하기 위해 공사의 예산편성 및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울시 주무부서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안 제31조제3항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운영과 관련된 예산편성 및 소송업무 등에 대해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하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임
-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73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²⁾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하는 한편 기구 및 정원, 인사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³⁾

2) 지방공기업법 제73조(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예산편성 및 소송업무 등 공사 주요 사항에 대해 주무부서와의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서울교통공사 주요 운영상황에 대한 투명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동 개정안에서 “중요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협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협의 의무가 과도하게 해석될 경우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책임 운영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바, 조례가 개정될 경우 조례해석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임

3)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